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따른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산·양육 지원과 관련한 민원 불편을 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용어 재정의(안 제2조)

- 출산양육지원금에 출산기념품 포함

○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함(안 제4조)

○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내용 명확히 함(안 제5조)

○ 신청 및 지급절차를 변경(안 제6조)

○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마련(안 별지 제1호 서식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〔기획감사실-2653('17. 3.20.)〕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해당 없음[주민복지과-19709('17. 3.31.)]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[예고기간 : '17. 4.27.~ '17. 5.17.]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따른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산·양육지원과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의 범주에 현금 외 출산기념품 등을 포함하고
- 안 제4조에서는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재혼 가정의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하는 등 출산 양육지원금의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출산기념품, 출산 축하금, 영아 양육 지원금 등 출산 양육 지원금의 지원 금액 등을 분명히 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는 읍면에서 출생신고 시 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'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'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따른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